●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297호

「은행업감독규정」,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,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및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1년 8월 2일 금융위원회

은행업감독규정 등 일부개정고시(안) 규정변경예고

1. 개정이유

금융업 신규 인허가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하여 심사중단 사유 및 심사재개요건을 규정하고, 금융업권 간 통일적인 규율을 위하여 일괄로 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금융업 신규 인허가 심사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 부여
 - 형사소송 또는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, 또는 금융 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업 신규 인허가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(6개월) 검토의무 부여

-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
- 나.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시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주기적 검토의무 부여
 - 형사소송 또는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, 또는 금융 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중단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심사 재개 권한 및 심사 재개 여부 주기적(6개월) 검토의무 부여
 - 심사중단 시부터 재개 시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
- 전자우편(이메일): soobin903@korea.kr
- 팩스: 02-2100-284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(전화 02-2100-2833, 팩스 02-2100-28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